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549
----------	-----

2019. 9. 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19. 3. 29. 임종국 의원 외 15인 공동발의 (2019. 4. 3. 회부)

2. 제안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 또한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개정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에 “장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
- 이밖에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장애” 표현을 수정함(안 제16조제2호).
-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7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해당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2019년 3월 29일 임종국 의원 외 15인이 공동발의 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주거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의 하나인 ‘심신장애’를 ‘장애’라는 용어에 내재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라는 보다 친화적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발의 배경을 보면, 서울시 인권위원회(‘18년 4차 정기회, ’18.10.3 1.)에서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을 권고¹⁾하였고, 이 조례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16개 조례 및 규칙(붙임1)을 대상으로 권고사항의 이행을 요청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²⁾됨.

- 또한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직접 인용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조례에 의해 설치된 시의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에 대해서는 수당·여비지급조례를 타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조례간의 위계와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음.
- 이 밖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음.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한 승 윤
연락처	02-2180-8207
이메일	syhan@seoul.go.kr

1)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2) 현재까지 총 21개 조례가 개정되었음.(붙임 2 참고)

[붙임 1]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해촉 사유 조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조례

연번	조례명	조항
1	계약심의회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2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위원의 임기)
3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4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5	건축 기본 조례	제18조의2(위원의 해촉)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위원의 해촉)
7	역사도시 기본조례	제22조(위원의 해촉)
8	건축 조례	제5조의3(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9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10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해고)
11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위원의 해촉)
12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13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의 해촉)
14	주거 기본 조례	제16조(해촉)
15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16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해임)

[붙임 2] 심신쇠약 용어 개정 조례 현황

연번	조례명	비고
1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2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장제출
3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5	역사도시 기본조례	"
6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7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장제출
8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의원발의
9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0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
11	건축 기본 조례	"
12	건축 조례	"
13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14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15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
16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7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18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19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20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붙임 3]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포함한 모든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을 권고합니다.

서울시 조례 중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7년 '자치법규 인권관련 실태조사'를 제안하여 추진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서울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인권친화적인 자치법규 제·개정으로의 유도를 통해 시민 인권을 제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조례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위원 위촉 해제 사유' 조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시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16조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문구는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는 만큼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보고서 최종권해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강화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의 경우에도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된 부분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개정(16.2.3)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위원 위촉 해제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회 해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생략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의 위원 위촉 해제 사유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포함한 모든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을 권고합니다.

참고자료 :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해촉 사유 조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조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8년 10월 31 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